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04. 25(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03. 31

나. 제안자 : 안병배, 노현경, 류수용, 김기홍 의원 (찬성자 3인)

다. 회부일자 : 2014. 04. 01

라. 상정일자 : 2014. 04. 25(제215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안병배 의원
- 검토보고 : 왕동향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주민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 등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하였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과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민들이 외부의 강제적·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213회 임시회시 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사무 등의 사유로 적법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적용대상)에서는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및 기타 유사한 사정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동 제정 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법령과의 관계)에서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 한 바, 자연재해를 지원 대상으로 정한 사항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며

- 안 제4조(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 지원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이나, 자문성격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의결 권한 있는 위원회 포함)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므로 “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요지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안 제6조(생활안정지원금)는 주거지 상실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재정법」에서는 개인에게 기부금 등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홍성욱 위원>

- 검토보고와 집행부의견이 어렵다는 입장이나만 시당 의견수렴 과정에서 월미도 주민 찾아 뵈 적 있어 억울함 잘 알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란 점에서 의견은?
⇒ 지방재정법 문제중 법률에 관한 사항은 1항, 그 외 조항 있음. 또한, 조직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 구성 위원이 행정부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입법재량의 범위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안 제6조중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지급하도록 하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제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로 인정되는가?
⇒ 단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경우에 지원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가 주된 사항인데 제1조,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임. 또한, 합

의제행정기관 설치가 자치권 침해인데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가?

⇒ 합의제행정기관은 위원회를 포함하는 내용임.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제안 가능함.

○ 목적 및 적용대상을 감안하면 대상이 너무 넓은?

⇒ 재난지역일 경우에는 인천시에서도 지원금 지원 사례 있음.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님. 인천시가 책임을 지도록 협약하였으므로 이제는 국가사무가 아닌 인천시의 사무임.

○ 적용대상을 자연재해,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라면 자연재해에 대하여 시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가?

⇒ 법으로 규정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이용범, 류수용, 이상철, 홍성욱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 수정가결 내용

- 안 제2조 제1호 중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를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로 수정하고

- 안 제6조 중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를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로 한다.

안 제6조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1. <u>천재·지변 등 자연재해</u></p> <p>2. (생략)</p>	<p>제2조(적용대상) ----- _____ _____ -----</p> <p>1. <u>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u></p> <p>2. (제정안과 같다.)</p>
<p>제6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u></p>	<p>제6조(생활안정지원금)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u>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u></p>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 등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2. 기타 위와 유사한 사정으로서 이 조례 제4조의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3조(법령과의 관계)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지 상실주민 등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
2. 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지원금 등 지급액 및 지급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의원

3. 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다.

제8조(지급청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등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출국자, 재소자 등 부득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되돌려 받고, 되돌려 주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